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

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노웅래・김민기・윤재갑

권인숙 · 강득구 · 소병훈

신동근 • 우원식 • 이개호

이상직 · 김회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학 내 성희롱,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,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, 대학원·대학(4년 제)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(30.7%)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인권센터) ① 학교는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9조의3(인권센터) ① 학교는
	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
	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
	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
	<u>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
	② 인권센터의 설치・운영 등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
	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
	<u> 정한다.</u>